



제426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행정안전위원회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창업지원 시설·서비스 지원 및 빈집 철거 지원〉
■ 이춘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279호)

2025. 7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정순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창업지원 시설·서비스 지원	2
2. 빈집 철거 비용 지원	6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춘석의원 등 12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3. 회부연월일 : 2025. 3. 2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, 기술,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·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.

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,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1. 창업지원 시설·서비스 지원

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등을 구축·운영하거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제3호).

현행	개정안
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	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3. <u>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·공간 구축, 운영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</u>
3. ~ 5. (생략)	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	부칙
	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23년 1월 1일 시행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2022.6.10. 제정)은 청년과 중장년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임금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, ② 창업 비용, 기술,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, ③ 주택을 지원하거나 수리·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.¹⁾

개정안은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·공간을 구축·운영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구상하는 예비창업자와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자 등이 사업계획을 발전시키고 경영 등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,

창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반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체계적·다각적으로 활성화하고 청년·중장년의 정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.

창업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은 창업교육 및

1)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
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
 2.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, 기술,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
 3.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·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 4.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
 5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.

창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시설을 설치·지원하고 보육공간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하여는 국·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창업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,²⁾

인구감소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인구유출이 이루어지고 있

2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제10조(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·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

6. ~ 8. (생략)

제29조(민관협력형 신산업·기술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) ①·② (생략)

③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,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·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굴·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33조(창업기업 육성 시설·지역의 지원 등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지원할 수 있으며, 대학·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·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시설,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53조(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)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·장소를 제공하고 경영·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(이하 “창업보육센터”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자(설립·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창업보육센터사업자”라 한다)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(이하 “입주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⑥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어 창업지원 등 ‘적극적 노동시장 정책(Active Labor Market Policy)’의 필요성이 더 높으므로, 창업교육 지원 강화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청장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.

다만, 개정안은 창업 교육 사업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에 필요한 시설·공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창업교육 시설·공간 지원은 (예비)창업자에 대한 **간접적인 지원**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창업 활성화 및 청년·중장년의 정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, 현행법에 따라 ‘창업 비용, 기술,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’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,

창업교육 시설·공간에 대한 지원시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·공간 방치 가능성 등이 우려되므로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**신중검토**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2. 빈집 철거 비용 지원

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화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 ① (생략)	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용과 노후화된 빈집의 철거 비용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23년 1월 1일 시행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2022.6.10. 제정)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 신축·개수·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.

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을 통하여 「소규모 주택 정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상 빈집에 대하여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,³⁾

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노후화된 빈집의 ‘철거’에 대하여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.

다만, 2025년 4월 1일 빈집 철거에 대하여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이 개정되어, 개정안의 취지가 시행 예정 법률⁴⁾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350

3) 2024년도 예산에서는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소관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강화(1938-301)의 내역사업으로 ‘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지원’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고, 2025년도 예산에서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소관으로 이관되어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(1232-300)으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.

4)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법률 제20866호, 2025.4.1., 일부개정, 2025.4.1. 시행)

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·보수·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⑧ (생략)